◈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216호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신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본동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21. 3. 29.)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신규)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구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람기간: 2024. 6. 27. ~ 2024. 7. 29.
   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266)
   다. 공람내용: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구역 지정(신규)

202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신규)**

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 구분 | 정비구역 명칭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규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 - | 증) 51,696.0 | 51,696.0 | - |

나. 구역지정 조서

| 구분 | 구역명칭 | 위치 | 구역면적(㎡) | 구분 | | 비고 |
|---|---|---|---|---|---|---|
| | | | | 획지(㎡) | 정비기반시설(㎡) | |
| 신규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 51,696.0 | 39,357.6 | 12,338.4 | |

※ 건축물 기부채납은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 지상 2층 ~ 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환산면적 259.4㎡)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2. 정비계획 신규(안)**

가. 토지이용계획(안)

|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 합계 | | 51,696.0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12,338.4 | 23.9 | - |
| | 공원 | 1,647.3 | 3.2 | 세대당 3㎡(3,138.0㎡) |
| | 녹지 | 4,064.0 | 7.9 | |
| | 도로 | 4,975.9 | 9.6 | - |
| | 공공공지 | 1,651.2 | 3.2 | - |
| 획지 | 소계 | 39,357.6 | 76.1 | - |
| | 공동주택용지 | 39,357.6 | 76.1 |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포함 |

※ 건축물 기부채납은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 지상 2층 ~ 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환산면적 259.4㎡)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51,696.0 | - | 51,696.0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062.9 | - | 17,062.9 | 33.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30,400.7 | 감) 28,753.4 | 1,647.3 | 3.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36.3 | 증) 28,753.4 | 32,589.7 | 63.0 | |
| 일반상업지역 | 396.1 | - | 396.1 | 0.8 | |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 도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 | 4 | 국지 | 90 | 본동 19-66 | 본동 24-2 | 일반도로 | - | 동작구고시 제2012-5호('12.1.12) | |
| 변경 | 소로 | 3 | - | 4 | 국지 | 90 | 본동 19-66 | 본동 24-2 | 일반도로 | - | 동작구고시 제2012-5호('12.1.12) | 선형변경 |
| 신규 | 소로 | 2 | - | 8 | 집산 | 273 | 본동 13-3 | 본동 50-65 | 일반도로 | - | - | |
| 신규 | 소로 | 3 | - | 6 | 집산 | 221 | 본동 42-8 | 본동 47 | 일반도로 | - | - | |
| 신규 | 소로 | 3 | - | 3 | 집산 | 70 | 본동 47 | 본동 48 | 일반도로 | - | - | |

- 도로 결정 사유서

| 구분 | 도로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변경 | 소로 3- | 기점: 본동 19-66<br>종점: 본동 24-2 | • 구역계에 일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구역계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선형변경 | |
| 신규 | 소로 2- | 기점: 본동 13-3<br>종점: 본동 50-65 | • 현황 노량진로26길 폐지에 따른 우회도로 신설 | |
| 신규 | 소로 3- | 기점: 본동 42-8<br>종점: 본동 47 | • 동측 현황도로(노량진로30길) 대상지 내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 | |
| 신규 | 소로 3- | 기점: 본동 47<br>종점: 본동 48 | •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신설 | |

2) 공간시설

▪ 공원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규 | 공원 | 어린이공원 | 본동 50-16일대 | - | 증) 1,647.3 | 1,647.3 | - | |

- 공원 결정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신규 | 본동어린이공원 | 본동 50-16일대 | • 본동초등학교 및 본동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신설 | |

▪ 공공공지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규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본동 19-12일대 | - | 증) 1,651.2 | 1,651.2 | - |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신규 | 공공공지 | 본동 19-12일대 | • 본동도시재생뉴딜구역 등 대상지 주변 관광사업 활성화 이후 주민의 수요 시설 확보를 위한 유보지 형태의 공공공지 제공 | |

▪ 녹지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규 | 녹지 | 경관녹지 | 본동 34-22일대 | - | 증) 4,064.0 | 4,064.0 | - | |

- 녹지 결정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신규 | 경관녹지 | 본동 34-22일대 | • 대상지 주변 용양봉저정공원~안산~고구동산의 단절될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녹지축 조성 |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학교 | 중학교 | 본동21번지 일원 | 14,234.0 | 감) 483.0 | 13,751.0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1987-5호('87.2.21)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변경 | 학교 | 본동 21번지 일원 |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된 학교시설 폐지 | |

※ 본동 19-12, 19-52, 21-4, 22-1 필지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

▪ 사회복지시설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규 | 사회복지시설 | - | 본동 47 일대 | - | 증) 지상2층: 250.0<br>증) 지상3층: 250.0 | 지상2층: 250.0<br>지상3층: 250.0 | • 입체적 결정 범위<br>- 설치연면적 : 500.0㎡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층별 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착공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신규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br>- 지상2~3층<br>- 연면적 : 500.0㎡ | •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br>• 구역 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하는 건축물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 | | | 비고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신규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51,696.0 | - | 51,696.0 |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 227 | - | - | 227 | - | |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 |
| 신규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51,696.0 | - | 39,357.6 |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9.2이하 | 기준 204.9<br>허용 213.9<br>상한 233.3<br>법적상한 277.3 | - |

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동) | 세대수(세대) | 세대규모(전용) | 연면적(㎡) |
|---|---|---|---|---|---|
| 획지 | 39,357.6 | - | 1,046 | 전용면적 39.55 ~ 102.45㎡ | 208,531.72 |

1)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 기준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계획

| 총 공공주택 계획세대수 | 임대주택 계획 | |
|---|---|---|
| 296세대 | 계 | 296세대 |
| | 39A type (전용 39.55㎡) | 39세대 |
| | 59A type (전용 59.58㎡) | 11세대 |
| | 59B type (전용 59.57㎡) | 16세대 |
| | 59C type (전용 59.50㎡) | 98세대 |
| | 84C type (전용 84.45㎡) | 132세대 |

| 구분 | 내용 | 비고 |
|---|---|---|
|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 | •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것<br>• 전체 세대수 : 1,046세대<br>-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 : 455세대<br>- 토지등소유자 분 제외 : 일반분양분(295세대), 임대주택(296세대) | 「도정법」 제2조2호 나목2) |

2)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 기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임대주택 계획 | |
|---|---|---|---|
| 296세대 | 210세대 | 계 | 210세대 |
| | | 39A type (전용 39.55㎡) | 39세대 |
| | | 59A type (전용 59.58㎡) | 11세대 |
| | | 59B type (전용 59.57㎡) | 16세대 |
| | | 59C type (전용 59.50㎡) | 53세대 |
| | | 84C type (전용 84.45㎡) | 91세대 |

| 구분 | 내용 | 비고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0호 (2022. 12. 11.) | •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20%<br>• 전체 세대수 : 1,046세대<br>- 전체 세대수의 20% : 계획 210세대(기준: 210세대) | - |

3)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 기준에 따른 재개발의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임대주택 계획 | |
|---|---|---|---|
| 296세대 | 128세대 | 계 | 128세대 |
| | | 39A type (전용 39.55㎡) | 39세대 |
| | | 59A type (전용 59.58㎡) | 11세대 |
| | | 59B type (전용 59.57㎡) | 16세대 |
| | | 59C type (전용 59.50㎡) | 43세대 |
| | | 84C type (전용 84.45㎡) | 19세대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서울시 제2022-493호 (2022. 12. 12.) | • 정비계획용적률 세대수 (법 54조 적용 제외-초과분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br>• 정비계획상 임대주택(법 54조 적용 제외-초과분제외)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로 건설<br>• 정비계획용적률 전체 세대수 : 849세대<br>- 정비계획용적률 세대수의 15% : 계획 128세대(기준: 128세대)<br>- 전체세대수의 5% 이상 40㎡ 이하 : 계획 57세대 (기준: 53세대) | - |

4)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 기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계획

| 총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 건설규모(㎡) | 임대주택 계획 | |
|---|---|---|---|---|
| 296세대 | 82세대 | 8,686.18<br>(용적률 22.07%) | 계 | 82세대 |
| | | | 59C type (전용 59.50㎡) | 10세대 |
| | | | 84C type (전용 84.45㎡) | 72세대 |

| 구분 | 내용 | 비고 |
|---|---|---|
| 국민주택규모주택 공급기준<br>(법적기준) | • 국민주택규모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규모<br>- 상한용적률(건축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공급<br>= (건축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br>= (276.7% - 233.3%) × 50% = 21.7%<br>•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면적<br>= 대지면적 × 21.7% = 39,357.6㎡ × 21.7% = 8,540.6㎡ 이상 계획 | 「도정법」<br>제54조 |

5)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 기준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수 | 임대주택 계획 | |
|---|---|---|---|
| 296세대 | 86세대 | 계 | 86세대 |
| | | 59C type (전용 59.50㎡) | 45세대 |
| | | 84C type (전용 84.45㎡) | 41세대 |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규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 - | 증) 51,696.0 | 51,696.0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신규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본동47번지 일대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br>- 위치: 동작구 본동47번지 일대<br>- 면적: 51,696.0㎡ |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51,696.0 | - | 51,696.0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062.9 | - | 17,062.9 | 33.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30,400.7 | 감) 28,753.4 | 1,647.3 | 3.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36.3 | 증) 28,753.4 | 32,589.7 | 63.0 | |
| 일반상업지역 | 396.1 | - | 396.1 | 0.8 | |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 도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 | 4 | 국지 | 90 | 본동19-66 | 본동 24-2 | 일반도로 | - | 동작구고시 제2012-5호('12.1.12) | |
| 변경 | 소로 | 3 | - | 4 | 국지 | 90 | 본동19-66 | 본동 24-2 | 일반도로 | - | 동작구고시 제2012-5호('12.1.12) | 선형변경 |
| 신규 | 소로 | 2 | - | 8 | 집산 | 273 | 본동 13-3 | 본동 50-65 | 일반도로 | - | - | |
| 신규 | 소로 | 3 | - | 6 | 집산 | 221 | 본동 42-8 | 본동 47 | 일반도로 | - | - | |
| 신규 | 소로 | 3 | - | 3 | 집산 | 70 | 본동 47 | 본동 48 | 일반도로 | - | - | |

- 도로 결정 사유서

| 구분 | 도로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변경 | 소로 3- | 기점: 본동 19-66<br>종점: 본동 24-2 | • 구역계에 일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구역계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선형변경 | |
| 신규 | 소로 2- | 기점: 본동 13-3<br>종점: 본동 50-65 | • 현황 노량진로26길 폐지에 따른 우회도로 신설 | |
| 신규 | 소로 3- | 기점: 본동 42-8<br>종점: 본동 47 | • 동측 현황도로(노량진로30길) 대상지 내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 | |
| 신규 | 소로 3- | 기점: 본동 47<br>종점: 본동 48 | •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신설 | |

2) 공간시설

▪ 공원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규 | 공원 | 어린이공원 | 본동 50-16일대 | - | 증) 1,647.3 | 1,647.3 | - | |

- 공원 결정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신규 | 본동어린이공원 | 본동 50-16 일대 | • 본동초등학교 및 본동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신설 | |

▪ 공공공지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규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본동 19-12 일대 | - | 증) 1,651.2 | 1,651.2 | - |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신규 | 공공공지 | 본동 19-12 일대 | • 본동도시재생뉴딜구역 등 대상지 주변 관광사업 활성화 이후 주민의 수요시설 확보를 위한 유보지 형태의 공공공지 제공 | |

▪ 녹지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규 | 녹지 | 경관녹지 | 본동 34-22 일대 | - | 증) 4,064.0 | 4,064.0 | - | |

- 녹지 결정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신규 | 경관녹지 | 본동 34-22 일대 | • 대상지 주변 용양봉저정공원~안산~고구동산의 단절될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녹지축 조성 |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학교 | 중학교 | 본동 21번지 일원 | 14,234.0 | 감) 483.0 | 13,751.0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1987-5호('87.2.21)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
| 변경 | 학교 | 본동 21번지 일원 |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된 학교시설 폐지 | |

※ 본동 19-12, 19-52, 21-4, 22-1 필지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

▪ 사회복지시설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 | 본동 47 일대 | - | 증) 지상2층: 250.0<br>증) 지상3층: 250.0 | 지상2층: 250.0<br>지상3층: 250.0 | • 입체적 결정 범위<br>- 설치연면적 : 500.0㎡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층별 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착공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br>- 지상2~3층<br>- 연면적 : 500.0㎡ | •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br>• 구역 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하는 건축물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구역명 | 면적(㎡) | 획지 | | 면적(㎡) | | | 비고 |
|---|---|---|---|---|---|---|---|---|
| | | | 획지번호 | 위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규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51,696.0 | - |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 - | 증) 51,696.0 | 51,696.0 | |

2) 건축물 용도·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구분 | 관계법규 | 내용 | 적용 |
|---|---|---|---|
|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br>•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br>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br>근린생활시설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br>공동주택<br>근린생활시설 |
| | | •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주거시설<br>(주거외 용도 복합) |

※ 시행령 제71조1항3호, 5호, 8호(별표4, 별표6, 별표9) <개정 2021.7.6.>

▪ 건폐율에 관한 계획

•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획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불허용도 반영

▪ 용적률에 관한 계획

•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획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불허용도 반영

▪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0% 상향

**4. 기타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관계도서 및 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 첨부도면

[정비구역 결정(안)도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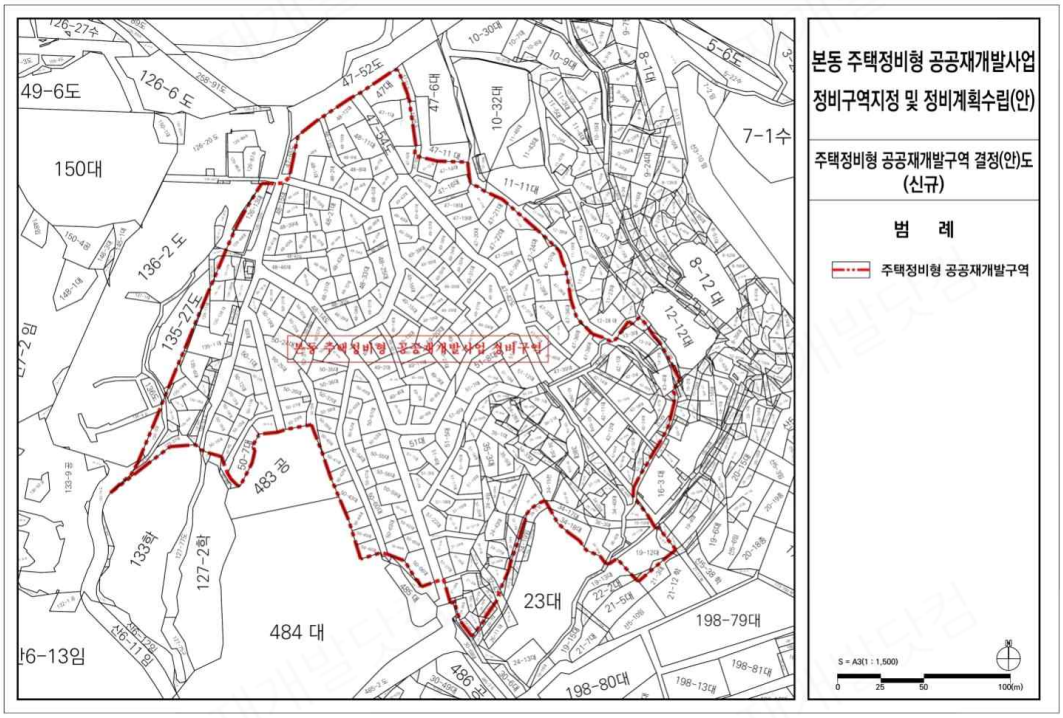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안)도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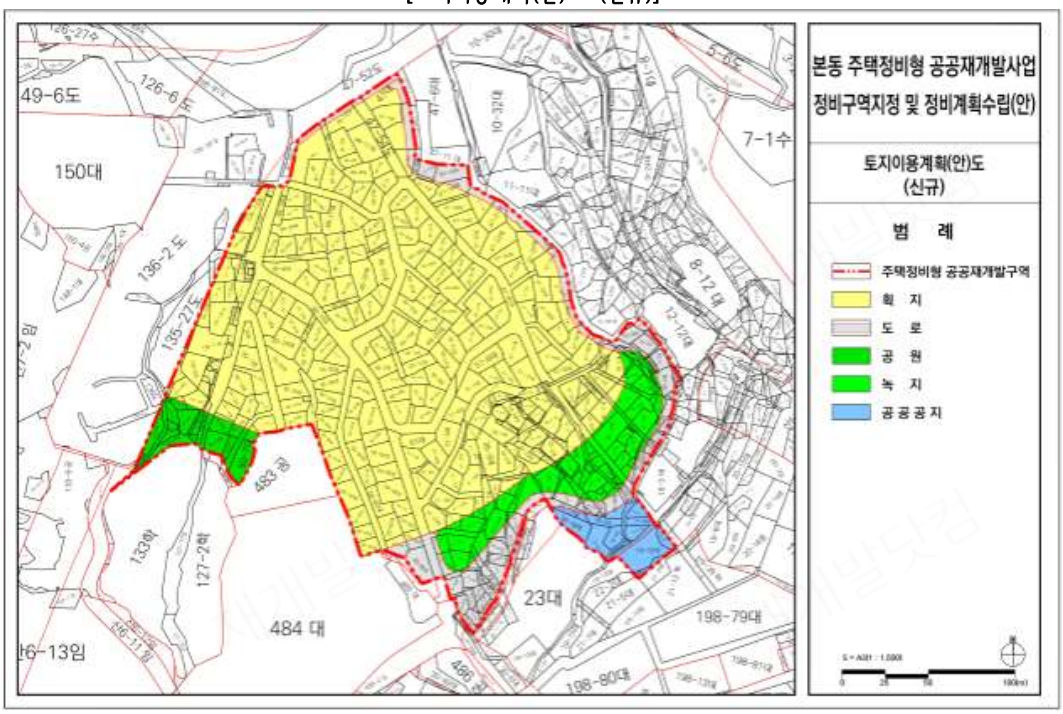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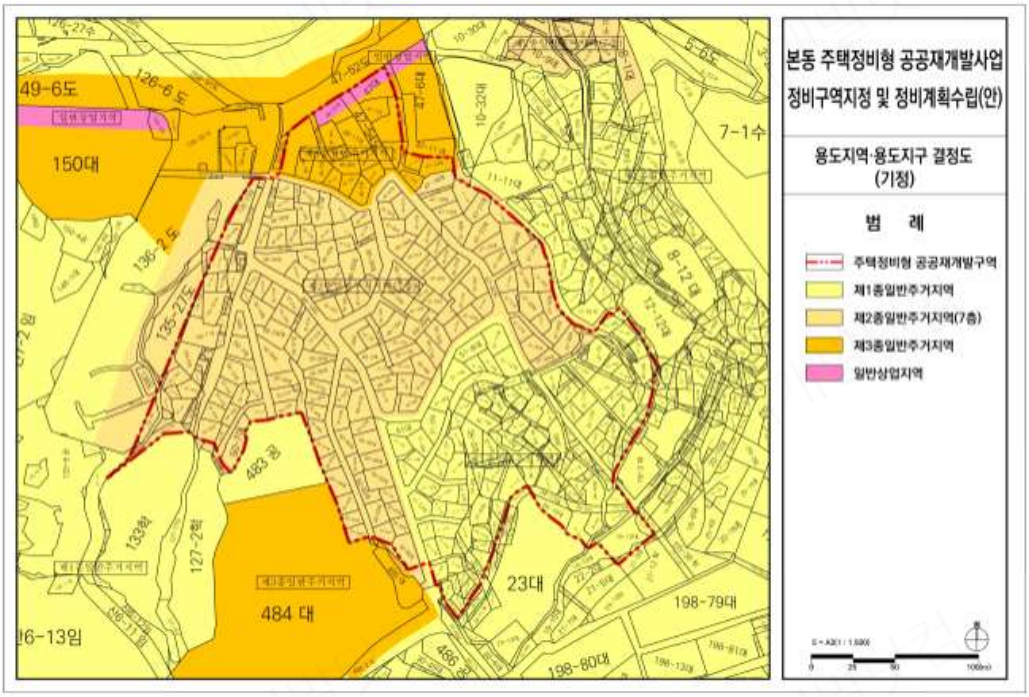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안)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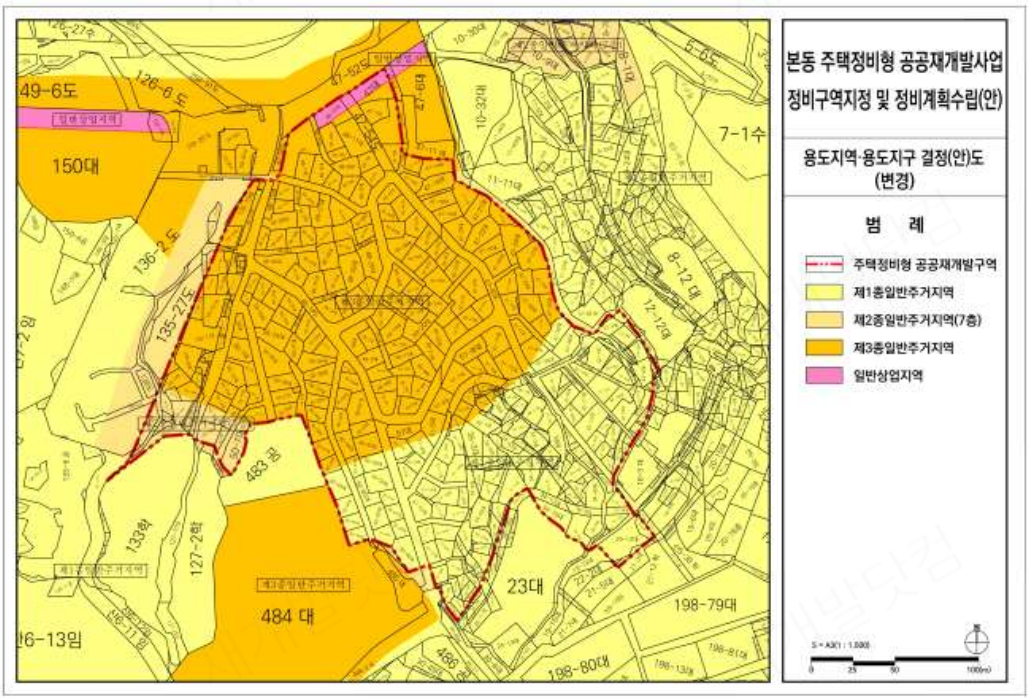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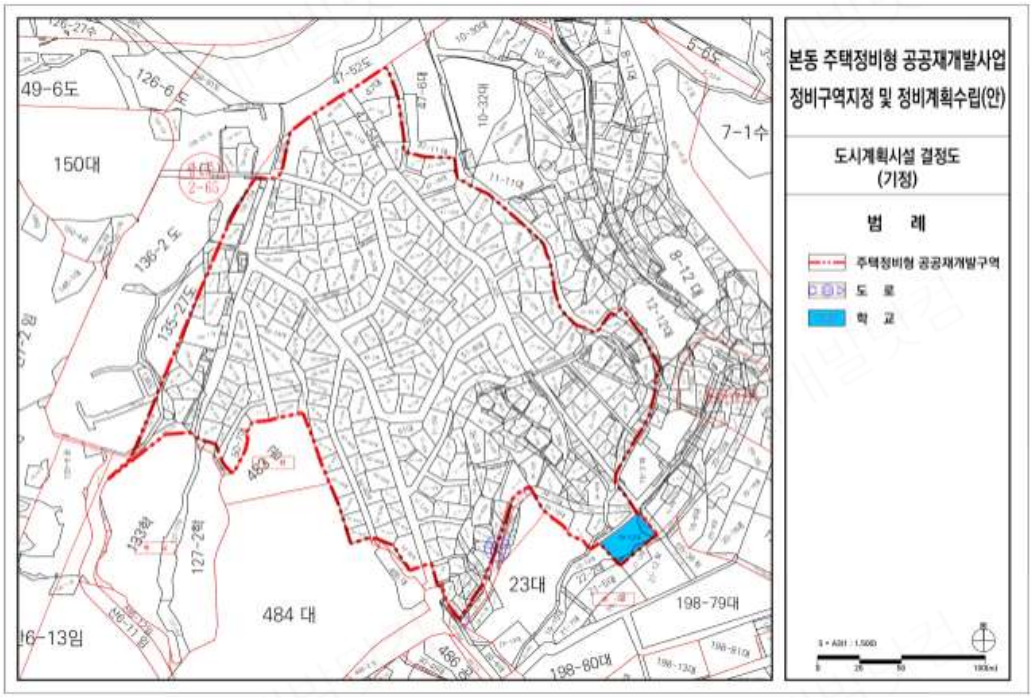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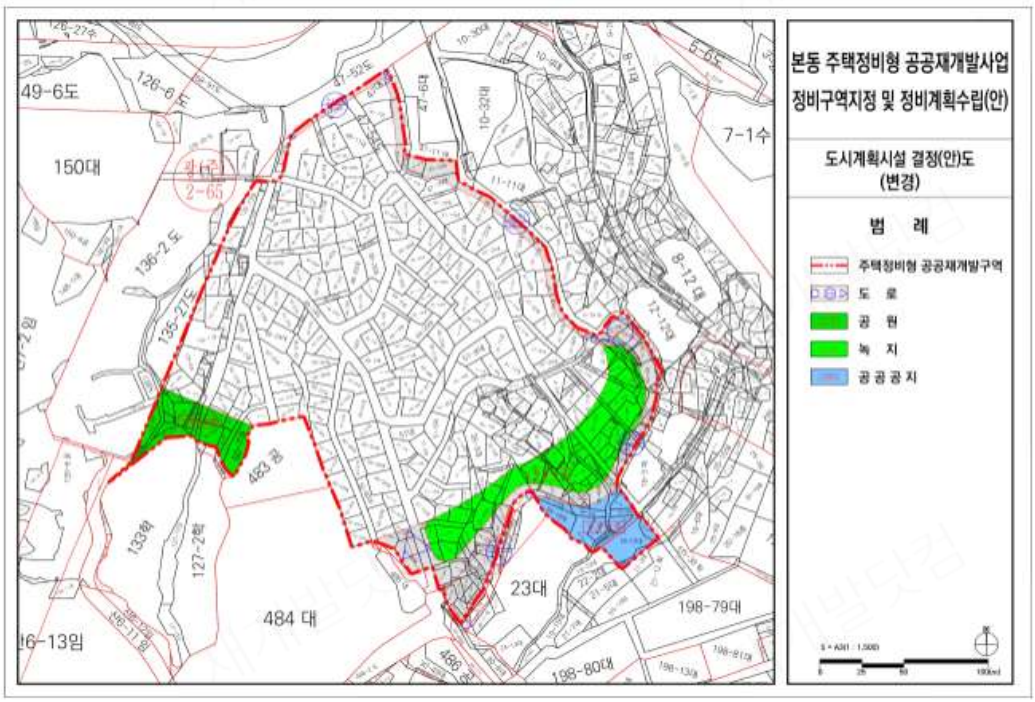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안)도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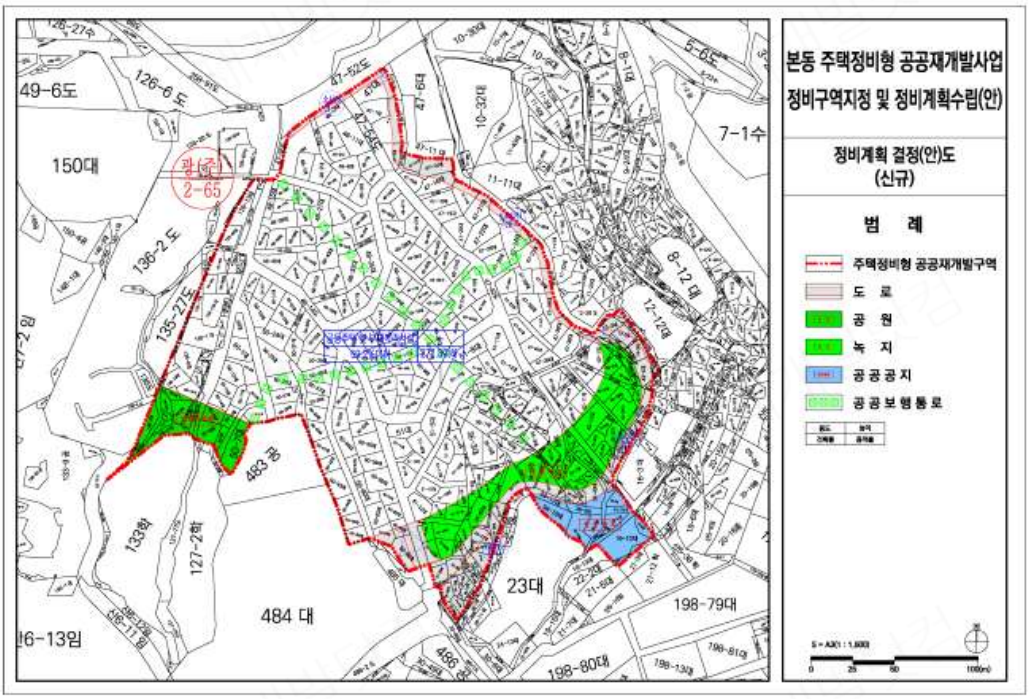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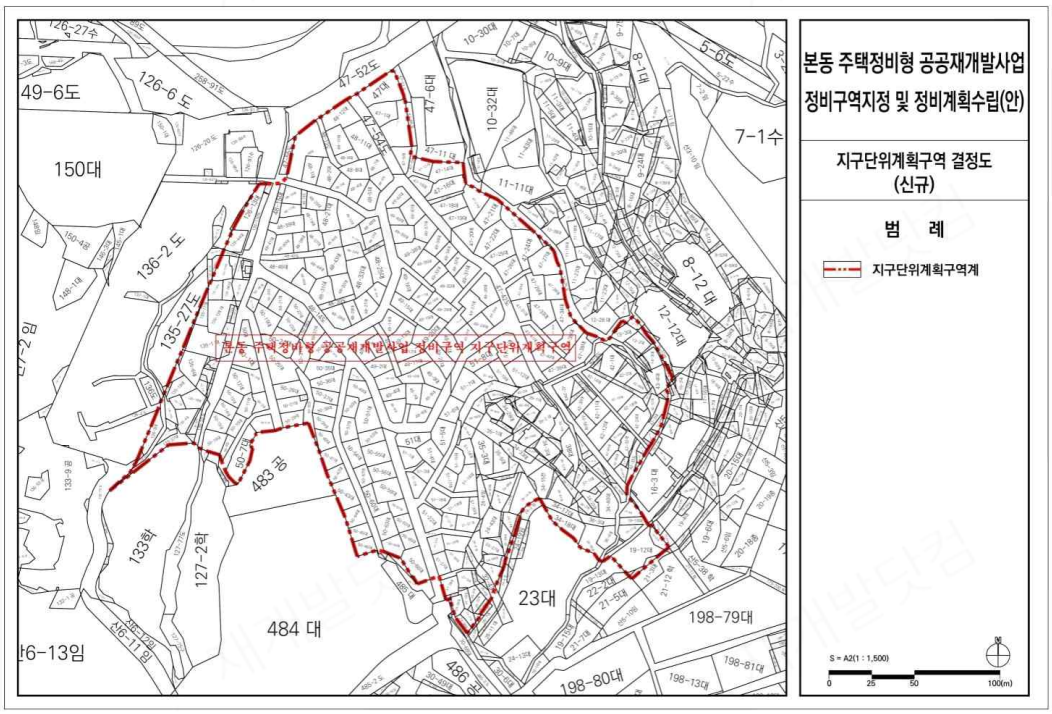

# 공 람 의 견 서

| | | | | |
|---|---|---|---|---|
| 사 업 명 |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사업(동작구 본동 47일대) | | | |
| 공람기간 | '24. 6. 27. ~ 7. 29.(공람공고일 익일부터 32일간) | | | |
| 대 상 물 건 지 | 토 지 | | | |
| | 건 물 | | | |
| 의 견 제 출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내 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217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등 규정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가 타 법령 및 법령 본문과 일치하도록 조문 수정 및 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등에 의거 일부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동작구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137 FAX : 820-9979, E-mail : seyeot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작구 소속”을 “동작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성)”을 “(기금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소요금액”을 “총 소요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제4항 본문 중 “연임 할”을 “연임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업무”를 “학자금 업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 회계직 공무원)”을 “(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업무”를 “학자금 업무”로 한다.

제5조 중 “동작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를 “동작구 환경공무관의”로, “(대학교 포함)”을 “(대학교를 포함한다)”로, “입학 또는”을 “입학하거나”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업료포함”을 “수업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급시 월임금액”을 “지급 시 월 임금액”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함”을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청금 포함)”을 “(신청금을 포함한다)”로, “보증보험 가입이나”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같은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동작구 ----------. |
| 제2조(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조(기금 조성) ①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 그 밖의 수입금 |
|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출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② ---------- 총 소요금액----------. |
|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 연임할 ----. ---------- 전임자 임기----------.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⑥ ---------- ----학자금 업무 ----------. |
|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생 략) | 제4조(기금 회계관계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 ② ---------- 학자금 업무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 제5조(대여 대상) ---------- 동작구 환경공무관의 ----------(대학교를 포함한다) |

| | |
|---|---|
|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 입학하거나 ----------. |
|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6조(대여제한대상) ----------. |
|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포함) 전액 면제자 | 1. ---------- 수업료를 포함한다-----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생 략) |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현행과 같음) |
|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공제한다. | ② ---------- 지급 시 월 임금액---------- 범위----------. |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 |
|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1. ---------- 경우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학교를 중퇴하거나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 3. ----------. ---------- 한다. |
|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 경우 |
|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채권보전) ① ----------(신청금을 포함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같은 기관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 하여야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22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3조(자치법규 정비) 의거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기금의 회계처리 관련 서식 중 누락 된 것을 별지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조문 정비

나. 별지 서식 추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의거 일부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동작구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137 FAX : 820-9979, E-mail : seyeot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자금대여기금”을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일반 지출결의서

[ 당해예산 ] 년도 회계 [ 연계 ]

| 세 출 과 목 | | | | | |
|---|---|---|---|---|---|
| 조직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 통계목 |
| | | | | | |

| 품 의 정 보 | | | | | |
|---|---|---|---|---|---|
| 지출건명 | | | | | |
| 부서명 | | 담당자 | 팀장 | 과장 | 국장 |
| | | | | | |

| 원 인 행 위 | | | | |
|---|---|---|---|---|
| 제 호 ( . . .) | 담당자 | 팀장 | 과장 | 재무관 |
| | | | | |
| 금 원(금 원) | | | | |
| 지출상세 | | | | |
| 거래처 | 주소 | | | |
| | 상호 | | 성명(대표자) | |

| 지 출 결 의 | | |
|---|---|---|
| 검사(수) | 검사(수)자 | 확인자 |
| 지출결의 누계액 | 금 원(금 원) | |
| 결의정보 제 호 ( . . .) | 금 원(금 원) | |
|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 | 거래유형 | 금융기관 |
| | 증빙구분 | 계좌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예금주 |
| 거래처 | 주소 | |
| | 상호 | 성명(대표자) |

| 지 급 명 령 | | |
|---|---|---|
| 제 호 ( . . .) | 담당자 | 지출원 |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동작구 지출원

동작구 금고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납 입 고 지 서

| 납 입 고 지 서 | | | |
|---|---|---|---|
| 제 호 | 년도 | | 회계 |
| (관) | (항) | | |
| (목) | | | |
| 금 원(금 원) | | | |
| 단 | | |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 | | |
| 납입기한 년 월 일 | | | |
| 납입장소 금고 | | | |
| 년 월 일 | | | |
| 징수관 | | | |
| 성 명 ㊞ | | | |
| (납부자) 귀하 | | | |

| 영수필통지서 | | | |
|---|---|---|---|
| 제 호 | 년도 | | 회계 |
| (관) | (항) | | |
| (목) | | | |
| 금 원(금 원) | | | |
| 단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 | | |
| 년 월 일 | | | |
| 금고 ㊞ | | | |
| 징수관 귀하 | | | |
| 납입자 | | | |
| 징수관 ㊞ | 취 급 자 | ㊞ | |
| 수입금 출납원 ㊞ | 기 장 | ㊞ | |

| 영 수 증 | | | |
|---|---|---|---|
| 제 호 | 년도 | | 회계 |
| (관) | (항) | | |
| (목) | | | |
| 금 원(금 원) | | | |
| 단 | | | |
| 위 금액을 영수함. | | | |
| 년 월 일 | | | |
| 금고 ㊞ | | | |
| (납부자) 귀하 | | | |

[별지 제6호 서식]

# 징 수 결 의 서

과 주관

| | | | | |
|---|---|---|---|---|
| | | 발 의 | 년 월 일 | 인 |
| | | 고지서발행 | 년 월 일 | 인 |
| | | 납입 기한 | 년 월 일 | 인 |
| | | 징수부기재 | 년 월 일 | 인 |

| 년 회계 | | | 결 정 세 액 | | | |
|---|---|---|---|---|---|---|
| 세입 과목 | 관 | | 본세 | 가산금 | 이자 | 합 계 |
| | 항 | | | | | |
| | 목 | | | | | |
| | 세목 | | | | | |

금 원(금 원)

| | |
|---|---|
| 납 부 자 주소성명 | |
| 적 요 | |

[별지 제9호 서식]

# 지출부

| 회계연도 | 회계명 | 세출과목 | | | |
|---|---|---|---|---|---|
| | | 조직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단위: 원)

| 통계목 | 일자 | 명령번호 | 적요 | 채권자 | 예산현액 ① | 예산배정액 ② | 자금배정액 ③ | 지출액 | | | 지출잔액 | | |
|---|---|---|---|---|---|---|---|---|---|---|---|---|---|
| | | | | | | | | 일상경비 | 일상경비 외 | 소계 ④ | 예산현액 대비 (①-④) | 예산배정 대비 (②-④) | 자금배정 대비 (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계 | | | | | | | | | | | | | |
| 월 계 | |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계 | | | | | | | | | | | | | |
| 월 계 | |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 (계좌 · 현금)지급명령

년도 회계

(단위: 원)

| 연번 | 지급명령번호 | 명령구분 | 입금유형 | 채권자 | 입금계좌 | | 지급액 | 비고 |
|---|---|---|---|---|---|---|---|---|
| | |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br>예 금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작구 지출원

동작구 금고 귀하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 · 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297mm× 210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학자금 대여기금----------.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 |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 제9조(지출) ① · ② (생 략) | 제9조(지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③---------- 따른 ----------. |
|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 ·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회계준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별지 2호 서식] | [별지 2호 서식] 지출결의서 |

일반 지출결의서

| | | | | | |
| --- | --- | --- | --- | --- | --- |
| [ 당해예산 ] | 년도 회계 | | | | [ 연계 ] |
| 세 출 과 목 | | | | | |
| 조직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 통계목 |
| 품 의 정 보 | | | | | |
| 지출건명 | | | | | |
| 부서명 | | 담당자 | 팀장 | 과장 | 국장 |
| 원 인 행 위 | | | | | |
| 세 목 ( . . . ) | | 담당자 | 팀장 | 과장 | 재무관 |
| | 금 원(금 원) | | | | |
| 지출상세 | | | | | |
| 거래처 | 주소 | | | | |
| | 상호 | | | 성명(대표자) | |
| 지 출 결 의 | | | | | |
| 검사(수) | 검사(수)자 | | 확인자 | | |
| 지출결의 누계액 | 금 원(금 원) | | | | |
| 결의정보 세 목 ( . . . ) | 금 원(금 원) | | | | |
| | 공급가액 | | 부가세액 | | |
| | 거래유형 | | 금융기관 | | |
| | 증빙구분 | | 계좌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예금주 | | |
| 거래처 | 주소 | | | | |
| | 상호 | | | 성명(대표자) | |
| 지 급 명 령 | | | | | |
| 세 목 ( . . . ) | | 담당자 | | 지출원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동작구 지출원 | |
| 동작구 금고 귀하 | | | | | |

[별지 5호 서식]

[별지 6호 서식] 징수결의서

[별지 9호 서식] 지출부

[별지 5호 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

| 납 입 고 지 서 |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
|---|---|---|
| 제 호 년도 회계 | 제 호 년도 회계 | 제 호 년도 회계 |
| (관) (항) | (관) (항) | (관) (항) |
| (목) | (목) | (목) |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 단 | 단 | 단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 위 금액을 영수함. |
| 납입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납입장소 귀고 | 귀고 인 | 귀고 인 |
| 년 월 일 | 징수관 귀하 | (납부자) 귀하 |
| 징수관 | 납입자 | |
| 성 명 인 | 징수관 인 / 회 계 자 인 | |
| (납부자) 귀하 | 수입금 출납원 인 / 기 장 인 | |

[별지 6호 서식] 징수결의서

**징 수 결 의 서**

과 주관

| | | | | | |
|---|---|---|---|---|---|
| | | 발 의 | 년 월 일 | | 인 |
| | | 고지서발행 | 년 월 일 | | 인 |
| |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인 |
| | | 징수부기재 | 년 월 일 | | 인 |
| 년 회계 | | 결 정 세 액 | | | |
| 세입과목 관 | | 본세 | 가산금 | 미자 | 합 계 |
| 항 | | | | | |
| 목 | | | | | |
| 세목 | | | | | |

금 원(금 원)

| | |
|---|---|
| 납 부 자 주소성명 | |
| 적 요 | |

[별지 9호 서식] 지출부

**지출부**

| 회계연도 | 회계명 | 세출과목 | | | |
|---|---|---|---|---|---|
| | | 조직 | 장부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단위 : 원)

| 통계목 | 일자 | 영업번호 | 적요 | 세권자 | 예산편성 ① | 예산배정액 ② | 자금배정액 ③ | 지출액 | | | 지출잔액 | | |
|---|---|---|---|---|---|---|---|---|---|---|---|---|---|
| | | | | | | | | 일상경비 | 일상경비 외 | 소계 ④ | 예산편성대비 (①-④) | 예산배정대비 (②-④) | 지급배정대비 (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계 | | | | | | | | | | | | |
| | 월 계 | |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계 | | | | | | | | | | | | |
| | 월 계 | |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지급보증보험의 지급은 지자 명목 지하다 독립형 없에 지자 기입
※ 예산편성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세이하로 지출, 전년도 이월 등 증 · 감액을 포함 기재

| | |
|---|---|
| [별지 10호 서식] 지급명령부 | [별지 10호 서식] 지급명령부 |

**(계좌 · 현금)지급명령**

년도 회계

(단위: 원)

| 연번 | 지급명령번호 | 명령구분 | 입금유형 | 채권자 | 입금계좌 | | | 지급액 | 비고 |
|---|---|---|---|---|---|---|---|---|---|
| | |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작구 지출원** 직인

**동작구 금고** 귀하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해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297mm×210mm[백상지(80g/㎡)]